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1991. 6. 3

北韓研究室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 目 次

1. 北韓發表의 要旨 및 그 特徵 .....	3
2. 北韓의 유엔加入 宣言 背景 .....	4
가. 南北韓의 유엔加入 試圖 .....	4
(1) 南韓側 試圖 .....	6
(2) 北韓側 試圖 .....	9
나. 北韓의 유엔加入 背景 .....	10
(1) 對外的 側面 .....	10
(가) 韓蘇關係 改善 .....	10
(나) 中國의 對北韓 姿勢 旋回 .....	11
(2) 對內的 側面 .....	12
(가) 北韓의 經濟沈帶 .....	12
(나) 技術 및 經協을 위한 對美, 對日 接近 .....	13
(3) 對南 側面 .....	14
(가) 韓國의 유엔 單獨加入을 위한 「包圍壓迫外交」 .....	14
(4) 背景에 關한 綜合 示唆 .....	16
3. 北韓 유엔加入 宣言의 性格 .....	18
가. 北韓 유엔加入 宣言의 性格 .....	18
나. 4強의 視角 .....	19
(1) 美國의 視角 .....	19
(2) 日本의 視角 .....	19
(3) 中國의 視角 .....	19
(4) 蘇聯의 視角 .....	20
4. 北韓 유엔加入의 影響과 課題 .....	21
가. 直接的 影響(國際法的 側面) .....	21

(1) 韓半島에 關한 유엔 諸 決議의 效力 .....	21
(가) 유엔의 韓國政府 承認決議 效力 .....	21
(나) 韓國戰을 둘러싼 諸 決議 效力 .....	22
① 「38線以北으로 北韓兵力 撤收」 .....	22
② 北韓 : 「國際平和의 破壞者」 .....	22
③ 分爭의 平和的 解決 .....	22
(다) 韓國駐屯 유엔軍 司令部의 存廢 與否 .....	23
(2) 韓國休戰協定 改廢와 代替問題 .....	24
나. 間接的 諸 影響과 課題 .....	26
(1) 國家安保法 改廢問題 .....	26
(2) 冷戰構造의 解體 .....	26
(3) 美軍撤收 및 軍事問題 .....	27
다. 北韓의 對內外 政策 및 對南 政策의 變化展望 .....	27
(1) 北韓의 對內政策 .....	27
(2) 北韓의 對外政策 .....	29
(가) 對外政策의 變化 .....	29
(나) 周邊4強의 交叉承認 問題와 北·日, 北·美關係 .....	30
(3) 北韓의 對南政策 .....	31
(가) 美軍撤收問題 強調 .....	32
(나) 韓國革命力量 強化 .....	32
(다) 「聯邦制」 固守 .....	33
(라) 體制競爭 強化 .....	33
※ 附錄 : 南北韓 유엔加入의 諸 節次 및 分斷國 유엔加入 事例 ...	35
1. 南北韓 유엔加入의 諸 節次 .....	35
2. 分斷國 유엔加入의 事例 .....	37
가. 分斷國 유엔加入 事例 實際 .....	37
나. 示唆點 .....	38

## 1. 北韓發表의 要旨 및 그 特徵

가. 北韓은 27일 韓國과 별도로 유엔에 加入하겠다는 입장을 公式 表明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北韓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유엔성원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대책문제를 북과 남이 먼저 협의하고 합의된 결과를 유엔에 내도록 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主張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측」이 「유엔단독가입 정책은 불변 이라는 것을 거듭 주장하면서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北韓은 그들의 이익을 건지하기 위해 유엔에 가입할 것을 선언하게 되었다고 밝힘.
- 즉, 韓國의 유엔加入이 추진되는 조건에서 北韓은 그들이 「이것을 그대로 방입해 둔다면 유엔무대에서 전조선민족에 이익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는 것을 우려한데서 취해진 행동이라고 強辯.
- 北韓은 이어서 「유엔현장을 시종일관 지지해 온 입장에서부터 출발하여 해당한 절차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에게 공식으로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히고 동시에 北韓의 유엔加入決定은 오직 「남조선」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조치」라는 辨明을 덧붙였음.
- 그러나, 北韓은 「조선의 북과 남이 유엔에 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오늘의 사태는 절대로 고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유엔에서 북과 남이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希望事項을 表明.

나. 유엔加入에 대한 北韓發表의 特徵은,

첫째, 北韓 유엔加入 決斷은 그들 자신의 적극적 의지에 의한 행위  
위기가 아니라 떠밀려 가지 못해 이루어진 행위이며,

둘째, 北韓은 오히려 이 기회를 對內外的 그리고 對南關係에 이  
용하려고 하는 戰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임.

- 즉, 北韓은 유엔加入에 의한 南韓의 「分裂的 策動」의 강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對內的 體制維持 強化, 對南의 革命力量 強化 好機로,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가입을 통한 美國, 日本을 비롯한 대서방관계 개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2. 北韓의 유엔加入宣言 背景

### 가. 南北韓의 유엔加入 試圖

- 분단이후 南北韓은 줄곧 유엔가입의사를 밝혀왔고 수차례 유엔 가입신청을 내었음. 49년에서 75년까지 직접 가입신청 5차례, 友邦國 勸告決議案 제출 9번 등 14차례의 가입을 시도, 반면 북한은 49년에서 58년까지 직접신청을 2번 友邦國 勸告決議案 등 총 5번의 시도를 하였음.
- 한국의 초기 유엔가입 문제는 「唯一合法政府」로 승인받기 위한 목적이, 반면 북한측의 그것은 그들의 「正統性」획득을 위한 목적이 그 절대절명한 과제였음.
- 50년대 후반들어 北韓의 宗主國이었던 蘇聯은 「南北同時加入」이란 새 카드를 들고 북한의 유엔가입을 시도하였음. 그 뒤 북측은 독자적 유엔가입이 여의치 않자 70년대 들어서 單一國號 유엔가입 입장으로 旋廻하였음. 실제로, 金日成主席은 73年 6月 23日 연설을 통해 「平和統一 5大綱領」을 제시하며 「高麗聯邦共和國」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안을 내놓았음.

- 한편,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후 60년까지 第1共和國 外交政策은 북한의 不認定原則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음. 4. 19以後 第2共和國, 第3共和國 초반까지도 한국은 두개의 韓國論을 부정하는 「할슈타인」원칙 고수로 북의 유엔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외교정책을 계속 펴왔음.
- 그러나, 70년대에 와서 美·蘇 간의 데탕트 진행, 美·中 關係和解무드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對北韓 태도는 유연하게 변화됨. 그 결과 韓國이 70년 8. 15宣言에서 「南北韓間의 善意의 體制 競爭」 그리고 73年 6. 23宣言을 통해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을 제안함으로써 남북의 유엔정책은 평행선을 긋기 시작함.
- 70年代後半 80年代 넘어오면서부터 북한의 국제적위상은 저하된 반면 한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지위가 크게 향상됨. 그러므로 1991년들어 이러한 고양된 國際的位相을 기초로 유엔단독가입 의사를 확고히 표명하였음.
- 한편, 1991年들어 韓國의 유엔單獨加入 의사가 확고하며 中國, 蘇聯側도 그들의 「單一議席 유엔加入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오자 북한은 재빨리 그들의 「유엔加入案」으로 對 유엔정책을 급선회시킨 것임.

(1) 韓國側 試圖

(가) 韓國의 獨自의 試圖

加 入 申 請			處 理 結 果	
日 字	形 式	內 容	日 字	內 容
49. 1. 19	고창-외무장관 서리명의 사무총 장앞 서한	한국유엔가입 신청	49. 2.15	안보리, 신회원국 가입위의제 채택 결정(9:2)
			49. 2.24	신회원국가입위, 한국가입권고결정 (8:2:1)
			49. 4. 8	신회원국가입위, 안보리에 특별보 고서 제출
			49. 9. 2	안보리, 총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49. 9.22	총회, 안보리 특 별보고서 특정위 회부
			49.10.31 ~11. 4	특정위, 안보리 특별보고서 토의
51. 12. 22	張勉총리 명의 사무총장앞 서한	한국가입 재신 청		처리안됨
61. 4. 21	鄭一亨외무장관 명의 사무총장앞 서한	한국가입신청 재심요청		처리안됨
75. 7. 29	金東祚외무장관 명의 사무총장앞 서한	한국 가입신청 재심요청	75. 8. 6	안보리 의제채택 부결(7:6:2)
75. 9. 21	金東祚외무장관 명의 사무총장앞 서한	한국가입 신청 재심요청 및 북 한가입 불반대	75. 9.26	안보리 의제채택 부결(7:7:1)



(나) 韓國友邦國에 의한 決議案 提出

決議案 提出			處理 結果	
日 字	提出國家	內 容	日 字	內 容
49. 4. 8	자유중국 서리명의	한국가입권고 결의안 (안보리)	49. 4. 8	안보리, 소련 거부권 행사로 부결(9:2)
49.10.31	호 주	한국가입권고 결의안 (특정위)	49.11. 4 49.11.22	특정위, 가결(37:6:8) 총회, 가결(50:6:3)
54.11.11	미 국	아르헨티나등 3개국 의 10개국 가입권고 공동결의안에 한국과 베트남 추가하는 수 정안(총회)		표결 없었음
55.12. 1 ~7	쿠 바	캐나다등 28개국의 18개국 가입권고 공 동결의안에 대한 소 련수정안에 한국과 베트남포함 20개국으 로 하는 재수정안(총 회 특정위)	55.12. 1 ~7	소련수정안 철회로 쿠바재수정안도 철회
55.12.10	자유중국	한국가입 권고결의안 (안보리)		(표결 없었음)

決 議 案 提 出			處 理 結 果	
日 字	提出國家	內 容	日 字	內 容
55.12.13	자유중국	브라질과 뉴질랜드의 공동결의안중 가입신 청국리스트에 한국과 베트남 추가하는 수 정안(안보리)	55.12.13	안보리, 소련 거부권 행사로 부결(9:1:1)
57. 1.22	미 국 등 13 개 국	한국유엔가입문제 재심추구공동결의안 (특정위)	57. 1. 30 57. 2. 28	특정위, 가결(45:6:22) 총회, 가결(40:8:16)
57. 9. 6	미 국 등 8 개 국	한국 유엔가입 권고 공동결의안(안보리)	57. 9. 9 57.10. 9 57.10. 9 57.10.22 57.10.25	안보리, 소련 거부권 행사로 부결 (10:1:0) 미국등 13개국, 특정 위에 안보리 부결 유 감표시 및 한국의 유 엔가입 자격재확인 결의안 제출 특정위, 가결 (51:9:20) 총회, 가결(51:9:21)
58.12. 9	미 국 등 4 개 국	한국 가입권고 공동 결의안(안보리)	58.12. 9	안보리, 소련 거부권 행사로 부결(9:1:1)

(2) 北韓側 試圖

(가) 北韓의 獨自的 試圖

加 入 申 請			處 理 結 果	
日 字	形 式	內 容	日 字	內 容
49. 2. 9	朴憲永 외교부장 명의 사무총장앞 전문	북한가입신청	49. 2.16	소련, 신 회원국 가입위원회에 회 의하자는 결의안 제출(안보리) 부 결(2:8:1)
52. 1. 2	박헌영 외교부장 명의 사무총장앞 전문	북한가입신청		처리안됨

(나) 北韓友邦國에 의한 決議案 提出

決 議 案 提 出			處 理 結 果	
日 字	提出國家	內 容	日 字	內 容
57. 1.24	소 련	남북한, 남북 베트남 등 4개국 동시가 입 검토를 안보리에 촉구하는 결의안(특 정위)	57. 1.30	특정위, 부결 (1:35:35)
57. 9. 9	소 련	57. 9. 6 日 미국 등 8개국의 한국 유엔 가입 권고공동결의 안에 북한가입권고 도 포함하는 수정안 (안보리)	57. 9. 9	안보리, 부결(1:9:1)

決 議 案 提 出			處 理 結 果	
日 字	提出國家	內 容	日 字	內 容
57.12. 9	소 련	58.12. 9字 미국등 4개국의 한국 유엔 가입권고 공동결의 안에 북한가입 권고 도 포함하는 수정안 (안보리)	58.12. 9	안보리, 부결(1:8:2)

- 參考 : 1945. 4. 28 大韓民國 臨時政府는 中國 重慶에서 趙素昂  
외무장관 명의로 다음 요지의 성명 발표한 바 있음.
  - 창설준비중인 유엔회원국 가입희망
  - 한국을 연합국 일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자료 : 서울신문, 1991년 5월 29일

## 나.北韓의 유엔加入 背景

### (1) 對外的 側面

80년대 말부터 東歐에서 일기 시작, 세계도처로 급속히 번진 改革開放의 바람으로 인해 北韓의 전반적인 對外關係는 孤立的 狀態로 변화.

#### (가) 韓·蘇 關係 改善

- 특히 90년 9월 韓國과 蘇聯의 關係正常化, 더 나아가 韓國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와의 濟州道 頂上會談등은 南韓과 더불어 北韓의 유엔 同時加入을 직접적으로 강력히 從憑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음.
- 실제로 4월 20일 盧·고르바초프 頂上會談에서 韓半島 緊張緩和를 위한 구체적 行동을 결의하였음.

- 南北對話의 持續을 위한 협조,
- 北韓의 조속한 核安定協定 加入,
- 韓國의 유엔加入 支持.

(나) 中國의 對北韓 姿勢 旋廻

- 한편, 中國은 이러한 韓-蘇關係의 改善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中國은 고르바초프 蘇聯대통령 訪韓에 언급, 「蘇聯과 南朝鮮間의 關係발전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례적인 적극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은 中國이 한반도문제에 현실적인 외교자세를 새롭게 내비친 것임.
- 동시에, 中國도 마찬가지로 韓 蘇 關係 改善을 통해서 한국과의 關係증진 필요성을 더 한층 깨닫게 된 듯함.
- 그 결과 中國의 李鵬總理는 5月 訪北時 北韓의 「統一後 하나의 議席으로 유엔에 加入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주장을 적극 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非現實性을 지적하고 동시에 南北韓의 平和的 關係改善과 유엔同時加入을 적극 권장하였을 것으로 감지됨.
- 실제로 北韓의 유엔加入 發表가 있자 中國政府는 그들의 官營TV를 통해서 「北韓의 유엔加入 申請決定을 지지한다」고 即刻 發表하고 더 나아가 「北韓의 유엔加入 決定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 결정으로 南北對話가 촉진될 것이며 韓半島의 緊張緩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論評한 것은 위의 사실을 立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 홍콩의 과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誌 最新號 5월 30日字는 이에 대해 언급 「中國은 서울의 유엔單獨加入을 封鎖하기 위해 유엔案保理서 拒否權을 행사해 달라는 北韓側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규모 經濟군사원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것은 바로

북한과 中國間의 「修辭學的 關係」와 「實質關係」사이에 격차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李鵬의 平壤 訪問 이후 北韓과 中國과의 관계가 急冷되고 있다고 주장.

- 中國의 이러한 對 北韓 態度變化는 韓國에 대해서 그동안 經濟的 交流를 중심으로 확대해 온 兩國關係를 보다 더 密着시킬 必要性和 脫冷戰時代에 普遍性的 原則이 지배하고 있는 유엔에 있어서의 中國의 現實的인 立場 등이 적극 反映된 것이라고 생각됨.

## (2) 對內的 側面

### (가) 北韓의 經濟沈滯

- 北韓의 經濟成長 速度는 6개년계획 기간동안에 다소 회복을 보이는 듯 했으나 성장률 감소외에도 여러 중요부문 생산량의 絶對價値에서 사실상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제1차 7개년計劃 기간에 특히 심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北韓은 第2次 7개년計劃(1978~84)의 실패(30~50%달성)와 第3次 7개년計劃(1987~1993)의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막대한 軍事費 支出로 北韓經濟는 극도의 沈滯에 빠짐. 최근의 GNP 성장률은 연평균 2% 정도이고, 3년간 계속된 흉작으로 식량난에 처해 있음(북한주민 총수요량 6백 40만톤에 비해 160만톤이나 부족한 총 4백 80만톤 生産量을 보이고 있음).
- 또한 70년대 이후 대의 債務問題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現在 對 日本 700억엔, 對 西歐은행단 9억\$, 對 蘇聯 22억루블 등 外債總額이 5억불에 달함).
- 이와 같이 70年代 末 80年代 初盤부터 특히 가중되어 온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자연히 北韓으로 하여금 外國과의 技術 및 經濟協力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어 보려는 노력을 경주케 하였음.

(나) 技術 및 經協을 위한 對美, 對日 接近

- 실제로 北韓은 「自力更生原則」 고수에 따른 科學技術의 낙후가 경제발전의 심각한 阻害要因이 되고 있다고 실토 하면서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없이는 현행 3차 7개년 經濟計劃(87~93년) 수행에서 제기되는 諸 難問題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음.
- 그리고 北韓의 最大 友邦國이자 援助國이었던 蘇聯과 中國이 사실상의 경제원조를 중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들 사회주의 대국들은 南韓과의 經協 등을 통해 「두개의 韓國」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북한측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발전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음(물론 對日, 對美 관계개선의 의미는 정치적 이해도 크게 반영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음).
- 對日의 경우, 北韓은 對外貿易과 對外資本去來에 있어서 일본과의 거래가 점차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蘇聯과 中國으로 부터의 경제원조 중단에 대한 相殺效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일본으로 부터의 경제원조이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주요 우방국이었던 동독이 西獨에 吸收統合됨으로써 그 代案으로서 日本을 선택한 측면도 있음.
- 對美의 경우, 현재 美國은 敵對國 貿易條例 (Trading With Enemy Act)에 의해 敵國과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北韓과의 공식적인 通商關係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경제교류가 이루어

질 경우, 이는 일본 및 서방국가들과의 經濟的 交流를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북한이 美國과의 關係正常化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 및 서방으로부터 科學, 技術導入, 合作投資維持, 貿易增進 등을 통해 北韓經濟를 活性化 시킬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北韓은 UN加入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통하여, 이제는 國際平和機構의 一員國이라는 外交의 擔保를 獲得하고, 동시에 그들의 經協을 위한 최대의 파트너가 될 日本은 물론이고 美國을 비롯한 他西方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勞力의 一環을 表出한 것으로 생각됨.

### (3) 對南 側面

#### (가) 韓國의 유엔單獨加入을 위한 「包圍壓迫外交」

- 韓國政府는 昨年(1990년)부터 유엔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면서 北韓 내부의 개방으로까지 유도하겠다는 목표아래 외교력을 집중하여 왔음.
- 韓國政府의 이러한 유엔가입 구상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同時加入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음.
- 그러나, 서울과 平壤에서 3차례 열린바 있는 南北高位級 會談이 交着狀態에 빠지는 등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자 결국 남한정부는 한국의 단독가입도 불사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急旋廻시킴.
- 실제로 韓國政府는 마침내 北韓이 南北韓 유엔同時加入에 계속 반대할 경우 韓國의 單獨加入을 1991年內로 實現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91年 5月 유엔에 通告하였음.



- 韓國政府는 北韓意思와 關係없이 韓國의 유엔가입 정당성으로 ;
  - 韓國은 유엔헌장이 規程한 모든 의무를 이행할 자격과 준비가 되어있고,
  - 世界 12大 貿易國으로 국제사회에서 普遍的 外交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며,
  - 國際社會가 오랫동안 南北韓의 존재를 인정, 90個國이 兩側 外交關係를 맺고 있고,
  - 南北韓이 유엔 傘下機構 등 여러국제기구에 별도로 가입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천명하였음.
- 유엔가입에 대한 이러한 確固不動한 正當性을 바탕으로, 韓國정부는 「包圍壓迫外交」戰略을 구사하기 시작. 大使館 등 公式채널을 통한 協助要請, 國內을 방문하는 각국 외교거물들과 交感을 나누는 분위기 조성작업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음. 특히 特使外交가 큰 몫을 擔當했다고 전해짐. 5月中 中東地域(강영훈 전 총리, 최관수 전 외무부장관), 아프리카지역(정원식 총리), 남미(이승운 전 부총리), 오세아니아(이원경 전 외무장관), 서유럽(박동진 전 외무부장관), 인도 동유럽(노신영 전 총리, 김창춘 외무부 본부대사)등에 여러 特使들이 派遣되었음.
- 특히 中國에 대해선 直·間接 채널을 활용, 友邦國을 통한 對中 설득을 부탁하는 방식을 원용, 금년에 방한한 각국 외교인사들의 공히 우리측의 「유엔 說得」을 받았는데 이들중 알라타스 인도네시아 외상, 미켈리스 이탈리아 外相 등이 두드러진 기여를 했다고 전해짐. 직접방식으로는, ESCAP總會때 이상옥 外務長官에 유화추(劉華秋)中國外交部 副部長을 만나 설득.
- 이러한 韓國의 「包圍壓迫外交」에 직면한 北韓은 4月 27

日 이종욱 副主席을 團長으로 한 代表團을 베트남 라오스 인도에 派遣, 이어서 5月 2日 최태복 로동당비서를 이집트·튀니지·리비아에 각각 보냈음. 이들 特使들은 한국의 유엔가입이 분단의 固着化며 이 문제는 南北韓이 먼저 協議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앞서 北韓은 '91년 2월 연형묵 정무원총리가 東南亞를 巡訪한 것을 비롯, 김영남외교부장이 모리셔스 짐바브외·모잠비크·탄자니아(2월 6~22일)를, 최강군 총참모장이 쿠바(2월 27일)를, 김정우 대외경제부부장이 獨逸(1月 12日)을 각각 방문한 바 있음.

- 그러나 北韓은 그들의 이러한 韓國유엔加入 「沮止外交」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엔가입 支持분위기가 西方은 물론 동구, 비동맹국가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對 유엔정책에 대한 새로운 對應策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감지한 듯함.
- 즉, 이러한 狀況下에서 韓國政府의 유엔單獨加入이 확정될 경우 北韓側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안은 南韓과 마찬가지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認識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4) 背景에 關한 綜合示唆

- 이상을 종합하면, 北韓은 對內外的 要因과 韓國의 UN單獨加入을 위한 「包圍壓迫外交」공세로 말미암은 마지못한 결정 즉, UN가입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임.
- 궁극적으로 유엔이라는 무대는 西方中心的인 결정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 偏頗的인 역학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북한당국은 이제까지 믿어 왔으므로 蘇聯의 開放政策 이후, 東歐의 崩壞등과 같은 일련의 사회주의 연대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

- 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의 UN가입 표명은 바로 그러한 북
- 한의 苦肉之策的인 決斷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북한의 UN가입 결단의 출구를 열어주게 한 시발적 요소는 바로 昨年(1990)유엔總會演說에서 美 大統領 부시가 北韓의 UN加入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언급이었음.
  - 美國의 이러한 「北韓UN加入」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의 북한 UN가입에 거부권을 표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해 왔다고 日紙는 보도하고 있음.
  - 그러므로 91년 4월 ESCAP總會에서 그레그 駐韓美大使가 유엔가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부시 미대통령의 유엔연설을 재확인한것은 북한의 유엔가입 결단의 중요한 旗幟制가 되었을 것으로 인정됨.
  - 그리고, 지금까지 北韓體制의 正統性은 「南朝鮮 革命」이라는 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근들어 權力承繼過程下에서 혁명수행 자체가 더욱 어려워졌고, 體制正統性 確保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왔으며, 더 나아가 김정일을 비롯한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세력들이 경제난이 加重되는 상황이 겹치면서 경제의 성공이 체제정통성 확보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더 「現實直視的」인 정책결정으로 對日, 對美, 對西方 접촉을 강화하면서 마침내 UN가입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적극적 측면도 있음.
  - 그런데, 보다 더 近接的인 要因으로 核査察을 피하기 위해 北韓이 UN가입을 결정했다는 설도 있음. 日本 외교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최근 北韓이 유엔加入 申請意思와 함께 IAEA 核安全協定에 관한 교섭에 응할 뜻을 표명한 것은 한국만 유엔에 가입, 對 北韓 核査察制裁 決議가 유엔에서 採擇되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라고 함.

### 3. 北韓 유엔加入 宣言의 性格

#### 가. 北韓 유엔加入 宣言의 性格

- 北韓의 政策目標은 共產革命에 의한 全 韓半島의 統一이며, 이러한 政策 目標을 성취하기 위해 北韓은 對內, 對南, 對外 3個 部門의 當面課題를 政策化 하는 과정에서 소위 3大革命 力量強化 路線을 내세워 왔다고 인정됨. 즉 北韓의 政策路線은 北韓에서의 革命力量 強化, 南韓에서의 革命力量 強化 國際的인 革命力量 強化로 정리됨.
- 北韓의 유엔加入 宣言의 意味는 統一 革命力量 減退를 挽回 하기 위한 苦肉之策的인 戰略的 採擇임. 다시 말하면, 北韓은 그들의 革命基地 構築 → 南朝鮮 革命 → 祖國統一이라는 基本적 目標은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통일 環境을 극복하기 위하여 戰術的으로 유엔가입 선언을 통해 3大革命力量 가운데서 對外政策上의 變化를 표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됨. 대외정책 그 자체에 있어서도 二步 前進을 위한 戰術的인 一步 後退이지 北韓外交政策의 骨格의 變化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가 「북한의 유엔정책 수정을 그들의 對南 赤化 拋棄로 볼 수 없다」고 한 언급은 바로 위의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間接的 側面에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우선 북한이 두개의 朝鮮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임. 이것이 韓半島의 分斷現實을 인정하게 되고 동시에 韓半島 問題를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시도로도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體制論理上 지나친 樂觀論的인 면이 있다고 생각됨.

## 나. 4強의 視角

### (1) 美國의 視角

- 美國은 北韓의 유엔加入 宣言에 대해서 일단 「肯定的 發展」으로 보고 이를 환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美國은 「積極的 措置」, 「중요한 進一步」등의 儀禮的으로 혼한 수사 조차도 아끼면서 이번 北韓의 유엔가입 결정은 北韓側의 적극적인 의지때문이 아니고 韓國單獨加入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우려, 「우리도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부득이한 消極的 動機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
- 그리고, 美國은 北韓의 유엔가입이 그들의 對外政策과 對南政策에 큰 변화의 시발점은 될 수 있을 지언정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必要充分的 要素는 아니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듯함.
- 기본적으로 美國은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지지하면서, 현 단계에서 北韓의 유엔加入을 「좋은 시작의 하나」로 보고 있음. 즉 美國은 이번 정책전환이 현실인정쪽으로 나아가는 북한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중의 하나로 내세운 南北對話進展에 있어서 새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2) 日本의 視角

- 「두개의 韓國」을 인정한 北韓의 유엔 同時加入 方針은 국제 환경에 순응하려는 부득이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으로 북한이 經濟難局 打開을 위해 서둘고 있는 日本과의 國交正常化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리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견해임.
- 그리고, 日本은 韓國의 單獨加入이 現實化되고 있는 가운데

취할 수 있는 부득이한 조치로서 차선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통일까지 過渡的이라는 意味가 있다고 밝혔음.

- 北韓이 이제야 「하나의 朝鮮」이라는 케케묵은 굴레를 벗어 던졌으며 非現實的인 「單一議席에 의한 共同加入」으로부터 「南北韓 同時加入」으로 전환함으로서 南北交叉承認을 위한 現實的 選擇을 했으며, 北韓의 이번조치가 韓半島 緊張緩和에 기여할 뿐 아니라 交叉承認에 決定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日本의 大體的인 見解임.

### (3) 中國의 視角

- 中國外交部는 北韓의 유엔加入 申請의 決定은 앞으로의 南北對話와 韓半島의 平和安定에 積極的 意義가 있다고 論評하였음.
- 中國共產黨 政治局 業務 委員인 李瑞環도 「南北韓이 동시에 유엔에 각각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이며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으로서 中國의 南北유엔 同時加入 支持表明을 公開的으로 하였음.
- 中國은 基本的으로 北韓의 유엔加入 決定이 「現實的」인 措置라고 판단함으로써 「두개의 韓國實體」를 公式的으로 認定한 셈이 되며 동시에 韓國과의 關係改善의 可能性까지도 내포하고 있음.
- 그리고, 中國이 北韓의 유엔加入의 決定이 「韓半島 安定에 寄與」할 것이라고 표명한 것은 北의 유엔加入 決定이 南北韓 對話의 進展으로 이끌 것이라는 의미조차도 숨췄고 있음.

### (4) 蘇聯의 視角

- 蘇聯은 기본적으로 北韓의 유엔 同時加入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그리고 이번의 北韓 決定이 「健全한 思考의

發露」라고 밝히고 이것이 「南北對話의 促進」에 기여할 것을 바라고 있음.

- 蘇聯은 南北 유엔同時加入이 現實的 判斷이며, 결코 이것이 韓半島의 分斷을 固着化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 결국,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은 南北의 高位級會談 再開를 비롯한 南北對話의 進展으로 유도케 할 것이며 동시에 統一 達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4. 北韓 유엔 加入의 影響과 課題

##### 가. 直接的 影響(國際法的 側面)

##### (1) 韓半島에 關한 유엔諸決議의 效力

##### (가) 유엔의 「韓國政府承認」決議 效力

- 南北韓이 UN에 동시가입하게 될 경우, 北韓의 地位와 南北韓의 位相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음. 즉 南北韓 UN同時加入이 실현될 경우, 韓半島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大韓民國의 對北韓優位論은 對等한 關係로의 位相變化로 歸着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UN總會 決議, 第195(Ⅲ)의 效力이 논의의 초점이 됨.
  - 당해 決議가 北韓의 地位는 未定으로 한채 大韓民國의 合法性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에 입각한다면 北韓의 地位는 가입과 동시에 적어도 UN의 테두리내에서는 확정됨.
  - 반면, 決議 第195(Ⅲ)이 北韓地域까지 포함하는 韓半島 全體를 대표하는 정부가 大韓民國政府임을 天命한 것이라면 UN가입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과거 中國의 UN복귀의 전례를 보더라도 決議 第195(Ⅲ)의 취소를 위한 새로운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됨.

(나) 韓國戰을 둘러싼 諸 決議 效力

① 「38線以北으로 北韓兵力 撤收」

- 1950年 6月 25日 유엔결의와 6月 27日 유엔결의중 戰鬪行爲 中止나 38線 以北으로 北韓 兵力의 撤收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련한 1953年 7月 27日 休戰協定 成立으로 그 效力을 이미 喪失하였으므로 南北韓 유엔同時 加入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음.

② 北韓:「國際平和의 破壞者」

- 北韓을 「國際平和의 破壞者」라고 규정한 유엔 安保理 決議는 南北韓의 유엔加入 허락과 동시에 自動적으로 파기되는 것으로 봄. 왜냐하면 유엔에의 가입은 憲章上의 義務를 受諾하고 그 義務를 履行할 意思와 能力이 있는 平和愛護國에게만 開放(憲章 第4條 1項)되기 때문에 經緯야 어떠한 일단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을 하였다면 南北韓은 公히 유엔에 의하여 平和愛護國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과거 第 3國이 北韓을 「平和의 破壞者」로 規定하고 北韓에의 助力을 禁止한 安保理 決議에 의하여 北韓에 대한 非 軍事의 制裁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同時加入 이후에는 이같은 援用根據가 喪失된다고 봄.

③ 「分爭의 平和的 解決」

- 南北韓間의 分爭 發生時 유엔加入 以後부터 兩者는 그 分爭을 유엔 憲章 第33條 以下에 따라 平和的으로 해결할 義務를 지게 된다. 다만 유엔加入 以前의 分爭의 平和的 解決義務는 國際慣習法에 依據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가입 이후 南北韓은 유엔憲章이라는 實定法的 根



據下에 분쟁의 平和的 解決義務를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것이 유엔이라는 國際機構를 통하여 擔保되므로 事實的 拘束力이 한층 強化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6. 25라는 北韓의 「평화파괴」 行爲에서 緣由되는 책임의 해결은 유엔憲章上的 分爭解決 節次에 따라야 할 것임.

(다) 韓國駐屯 유엔軍 司令部의 存廢與否

- 韓半島에 있는 유엔군 司令部는 그 설치의 기원을 安全保障理事會의 措置에서, 즉 1950. 6. 25의 決議(S 1501), 1950. 6. 27의 決議(S 1511), 1950. 7. 7의 決議(S 1588)라는 3개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음.
- 이중 S 1501은 北韓을 「평화파괴자」로 規定하였으며, S 1511은 유엔加盟國에게 北韓의 武力攻擊을 擊退하고 이 지역에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데 필요한 援助를 大韓民國에게 제공하도록 勸告함으로써 유엔군 司令部의 法的 基초로 제공하고 있음. 유엔軍 司令部의 地位에 관한 基초는 무엇보다도 S 1588에서 찾고 있음.
- S 1588은 그 法的效力을 앞의 두 결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군대와 기타 元조를 提供하는 모든 加盟國은 美國下의 統合司令部(Unified Command)하에 두도록 勸告하고 있음.
-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하게 되면, 그동안 나타났던 유엔 결의중 「평화파괴자」로서의 北韓의 地位와 關聯된 것들은 더이상 效力이 없어질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유엔 加入의 前提條件이 平和愛護國이기 때문에 北韓의 유엔 加入은 그동안의 평화파괴자로서의 地位를 치유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그러므로, S 1588이 北韓을 「평화과괴자」로 규정한 이전의 두 決議(S 1501, S 1511)에 기초를 두었고 실제로 유엔軍 司令部의 설치도 이러한 「평화과괴」 行爲를 擊退하기 위한 援助行爲로 볼 수 있는 바 南北韓의 유엔 同時加入으로 이러한 援助事由가 없어졌고 따라서 유엔軍 司令部의 設置 및 存續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 것임.
- 그런데, 一角에서는 이에 대한 見解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음. 유엔사는 단지 유엔기를 사용했을 뿐이며 실제로 유엔이 유엔사에 대한 직접적 작전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維持費用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韓國戰爭에 參戰한 軍隊는 一國의 國際義勇軍의 성격을 띤다는 주장임. 다시 말해 유엔사가 유엔을 代理하는 유엔의 補助機關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유엔가입에 따른 解體 與否도 거론할 수 없다는 것임.
- 그러나 유엔軍 司令部가 解體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休戰協定은 당연히 廢棄되는 것은 아님.

## (2) 韓國休戰協定 改廢와 代替問題

- 韓國 休戰協定은 1953年 7月 27日 國際聯合軍 司令官과 北韓軍 司令官 및 中共人民 支援軍 司令官에 의해 서명되었음. 休戰協定 締結의 主要機關은 軍司令官이나 休戰協定の 當事者는 그 法律行爲가 歸屬되는 法人格을 갖는 유엔과 北韓 및 中國임.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유엔의 산하기관의 하나인 유엔군 사령부의 法律行爲는 法人格體인 유엔에 歸屬됨. 따라서 유엔사령부가 해체되어도 휴전협정 당사자로서의 유엔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며, 유엔軍 司令部의 解體 그 自體는 休戰協定 效力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韓國이 休戰協定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休戰協定 締結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韓國의 當事者性を 否認하는 見解가 있으나 여러가지 기본적인고도 分명한 이유에서 한국은 당연히 休戰 當事者라는 見解가 支配的임. 그러므로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은 休戰協定의 주된 當事者인 南北韓에 의한 平和的 解決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의미함.
- 그러나, 韓國 休戰協定 第5條 62項은 雙方이 共同으로 受諾할 수 있는 修正, 增補, 또는 雙方의 政治的 水準에서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적절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대체될때 까지 休戰協定이 계속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엔 同時加入의 先行段階로서 南北韓間에 政治的 水準에서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適切한 協定이라고 할 수 있는 東西獨과 같은 相互關係에 관한 기본협정의 체결이 보장된다면 休戰協定을 廢棄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다시 말하면, 休戰協定은 최종적으로 적대행위를 法的으로 終結시키는 平和條約에 의해 완성된다고 볼때, 南北韓間 相互 不可侵, 分爭의 平和的 解決, 軍備縮小 및 이를 위한 國際的 保障 裝置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정 체결은 南北韓間의 對立的 狀態를 止揚하고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
- 특히, 平和條約의 內容인 전쟁상태의 완전한 종결과 우호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現狀 維持의 軍事的 保障 裝置가 요구됨. 즉 非武裝 地帶의 維持와 國際的 平和維持軍의 必要性, 同盟의 解消와 理解關係 列強에 의한 군사적 우려해소, 軍備減縮의 實效的인 方案 등이 선행조처로 합의에 도달하여야 할 것임.
- 왜냐하면 UN 同時加入은 平和條約을 가능케 하겠지만 전

쟁상대의 완전한 終結, 友好關係의 진정한 回復 保障, 交流 增進까지 보장하는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나. 間接的 諸影響과 課題

### (1) 國家保安法 改廢問題

-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을 앞두고 南北韓이 모두 武力 不使用과 平和愛護 遵守를 규정한 유엔 헌장정신을 이행해야 됨에 따라 現行 南北 對決構圖에서의 각종 制度와 法規가 새로 손질돼야 한다는 논의가 강하게 일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南北關係를 전쟁의 일시 중단상태로 인정(휴전상태 인정), 존치시키고 있는 駐韓 유엔軍 司令部의 存廢問題,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하는 문제 이외에도, 남북이 서로 양측을 적대관계로 규정한 상태에서 제정했던 韓國의 國家保安法의 改廢問題등이 현실에 맞고 또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내외적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 그러나, 北韓의 對外的 平和愛護 意志 表明이 바로 平和遵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제하에 韓國의 對北政策을 크게 변화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장이 지배적임.
- 長期的으로는 國際法과 모순되는 國內法은 漸進的인 開閉를 통해 國際法과 一致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과거 동서독과 같은 南北韓 基本條約 締結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2) 冷戰構造의 解體

- 그리고, 北韓의 유엔加入 決定以後, 短期的으로는 政府當局의 성과에 대한 홍보측면에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소지가 큰 반면, 統一問題와 관련한 在野, 學生運動權 등의 대정부 공격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이것은 在野 學生運

動圈 등은 北韓의 「朝鮮은 하나다」라는 논리를 계속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冷戰構造의 解體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하는 문제, 통일논의 등을 둘러싸고 國內의 行政府, 政黨, 社會 運動勢力 사이의 대립이 크게 증폭될 전망이다.

### (3) 美軍撤收 및 軍事問題

- UN加入 宣稱으로 北韓이 유엔 문제를 양보함으로써 팀스 피리트 문제를 비롯한 軍事問題에 있어서 요구가 드세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北韓이 UN에 加入하게 되면 國際적으로 보다 더 合理主義的인 態度轉換을 해야하므로 核査察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큼. 그러나 만약 北韓이 核査察을 收用할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美國의 韓半島 核武器 撤收, 더 나아가 美軍 撤收 등을 보다 더 강한 톤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들 諸 問題에 대한 對處는, 기본적으로 南北韓이 유엔憲章에 명시된 原則 들과 義務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會員國間에 서로 默視의 承認을 했다는 효과는 없으며, 동시에 相互 不法的 武力使用의 확률이 대폭 감소되고 평화적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다. 北韓의 對內外政策 및 對南政策의 變化

### (1) 北韓의 對內政策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엔加入을 시발로 北韓의 變化가 일제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극히 選擇的일 것이며 體制 生存에 威脅을 주지않는 한도내에서 局限될 확률이 높음.

- 이러한 大原則이 選擇基準이 된다고 가정할 때 현 시점에서의 변화가능성은 3大革命力量 要素 가운데 對外政策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으로 對南政策을 꼽을 수 있겠음. 그러나 對南政策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실제로 北韓은 27日 字 유엔加入宣言 聲名書와 30日 平壤放送을 통해 이번 결정은 南韓의 單獨加入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요구한 측면만 보더라도 이번의 對 유엔措置가 對外, 對南, 對內 分野에서 특히 對外部門에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김정일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91. 5. 27)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의 내용방송을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되풀이(27일 7회, 28일 5회, 29-30일 각 4회이상) 하고 있다는 점은 北韓의 유엔加入宣言以後 그들의 대내적 집안단속 강화를 克明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對內的으로는 주민동요를 철저히 억제하면서 對外的으로는 開放政策을 취하고 있는 北韓 權力層의 이같은 선택은 구 동독 등 동구국가들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던 초기단계에 구사했던 政策路線과도 恰似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음.
- 결국, 北韓의 유엔加入이 體制 存立의 論理에 따른 것이지 開放論理와는 상관없이 전개될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와 단절을 강화시켜 體制團束에 골몰할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北韓은 지금까지 「朝鮮은 하나」라는 論理를 강조하면서 그 토대위에서 南朝鮮 解放 뿐 아니라 父子世襲體제도 正當化시켜 왔으므로 그러한 對內政策을 변화시키기에는 많은 理論的 難題와 自體의 崩壞危險性 등의 부담을 크게 안고

있음.

## (2)北韓의 對外政策

### (가) 對外政策의 變化

- 北韓의 이번 유엔加入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한 부문이 바로 對外政策 부문임.
- 특히 對外關係에 있어서 北의 변화는 우선 南北體制 競爭에서의 劣勢를 挽回해야 한다는 現實的 戰術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北의 결정은 그 出發點에 南韓과의 關係 改善이란 側面은 排除되어 있고 당면한 經濟危機 打開을 위한 美國과 日本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대표적 예로,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 改善에 가장 큰 걸림돌 되어 왔던 核査察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전향적인 자세의 첫 심벌로 유엔가입 발표 바로 다음날 29일에 '85年 核擴散 禁止條約에 加入한 후에 계속 서명을 거부해온 核安全協定締結에 대한 交渉再開 意思를 表明하였음.
-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向後 北韓의 外交勞力은 유엔 무대를 바탕으로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 改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經濟難 妥結을 위해 서방국가와의 資本-技術交流에 적극 나설 것이며, 아세아 太平洋地域의 광범한 협력움직임에도 동참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결국, 北韓의 유엔加入은 韓半島 交叉承認이라는 懸案을 急進展 시킬 것으로 예상됨. 北韓의 유엔加入으로 말미암아 中國이 韓國과 본격적인 政治協商을 갖게될 객관적인

여건이 확보된 상태하에서 北韓은 日本 또는 美國과의 關係 改善을 위한 보다 더 양호한 입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北韓은 그들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인 한시해를 통해 6월 5일 저녁 리처드 솔로몬 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를 비롯한 美 행정부 관리들과 美 北韓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서로의 의견 개진을 적극화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北韓의 中·蘇 關係는 그들의 유엔加入 決定에 관계 없이 김정일의 承繼問題에 직면하여 어느정도 中·蘇에 순응하는 자세를 당분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

(나) 周邊4強의 交叉承認 問題와 北·日, 北·美 關係

- 유엔同時加入과 周邊4強에 의한 交叉承認의 先後關係에서 나타나는 法的 效果는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점을 갖고 있음.
  - 즉, 4強에 의한 交叉承認이 유엔加入 以前에 행해질 경우, 韓國은 中·蘇와의 國交關係樹立과 유엔加入, 그리고 北韓은 美國과 國交關係 樹立과 유엔 加入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 반면, 4強이 對南 北韓交叉承認에 앞서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에 相互合意함으로써 유엔同時加入이 실현될 경우, 韓國의 유엔加入이 곧 中·蘇와의 國交關係 樹立을, 北韓의 유엔加入이 곧 美國과의 國交關係 樹立이라는 효과를 자동적으로 동반하는 효과를 갖는것은 아님. 이것은 유엔加入宣言과 관련하여 默視的 承認으로 推定되는 것을 排除하기 위한 留保宣言을 동반하지 못하고 유엔내에서 加盟國間的 關係에 그치기 때문임.



- 美國, 日本, 中國, 蘇聯이 南北韓 유엔加入에 贊成할 경우 일반적 관행에 의하면 이는 默視的 承認을 의미하게 될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함.
- 비록 美國과 日本이 北韓의 유엔加入에 찬성해도 兩強大國이 北韓을 承認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음.
- 실제로, 美國은 北韓의 유엔加入과 美·北韓關係 改善은 別個라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음. 즉 北韓이 유엔회원국이 되든 못되든 美國과의 關係改善은 별개의 궤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國際原子力機構의 核安全協定 締結, 國際테러 拋棄, 南北韓의 緊張緩和와 信賴構築을 위한 對話의 實質的 進展 등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北韓의 核安全協定 締結에 대한 態度變化 여하에 따라 美國 北韓과의 關係 개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 日本과 北韓의 關係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核査察問題 등으로 兩國會談이 交着狀態에 빠진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北韓의 核査察問題에 대한 轉向的 姿勢變化가 있게 되면 美·日·韓國 關係 연계선상에서 北·日, 北·美關係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봄.

### (3) 北韓의 對南政策

- 유엔加入 宣言 以前까지 北韓의 對南戰略은,
  - ① 美軍 撤收
  - ② 3大 革命力量 強化와 더불어 南韓의 革命力量強化 (『民族統一戰線』과 같은 革命鬭爭을 장려하고 지원 함),
  - ③ 『聯邦制』 固守,
  - ④ 南北對話는 赤化統一戰略의 一環(全民族會議 등을 내

세워 선전의 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南朝鮮 革命』을 선동함),

⑤ 交叉承認이나 유엔 同時加入 拒否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南朝鮮 革命』을 基調로 하고 있는 北韓의 對南戰略은 근본적으로 北韓의 體制正統性 維持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임. 그러므로 그들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않는 선에서 약간의 對南政策만이 변화가 예상될 뿐이며, 그들의 기본적인 政策目標인 對南 革命力量強化 攻勢는 누그러뜨리기보다 더 강화할 전망이다.

(가) 美軍 撤收問題 強調

- 먼저, 美軍撤收 問題에 있어서, 北韓은 유엔加入 以後 유엔 무대와 南韓 內의 輿論을 이용하여 유엔軍 司令部 閉鎖 休戰協定 廢棄 美軍 撤收의 주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임.

(나) 南韓 革命力量 強化

- 南韓의 革命力量強化 측면에 있어서, 北韓은 오히려 그들의 「韓國의 單獨加入 決定으로 全民族의 利益과 관련된 중대 문제들이 유엔에서 偏見的으로 논의 됨을 방지하기 위해 택한」 유엔加入 결정을 南韓內 『人民』들에게 강조 하므로써 한국정부의 이러한 『分裂策動』을 糾彈하면서 韓國의 分裂을 조장시키고 그들의 同調勢力들을 擴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 예상됨.
- 그러므로, 北韓은 政治協商會議 召集 등 비당국간 접촉을 위한 기존의 정치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며, 『分斷 固着』의 難局으로 몰고간 책임을 빌미로, 일련의 對 南韓 宣傳攻勢는 南韓內 時局不安要因들이 사라질때 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다) 「聯邦制」固守

- 이러한 과정속에서,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여온 『聯邦制』안의 固守는 기본적으로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나 상황의 추이에 따라 수세적, 또는 攻勢的 防禦形態로 약간의 方法論 修正은 不可避할 것으로 생각됨.
- 실제로, 北韓의 金日成은 이미 今年(1991)初 新年辭를 통해 『暫定的으로는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 中央政府의 기능을 높여가는 방향에서 聯邦制 統一을 漸次的으로 完成하는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80년 이후 동요없이 계속 지켜온 『高麗聯邦制』案의 修正 可能性을 示唆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北側은 그후 윤기복 통일정책 심의회 위원장, 정준기 대외문화 연락위원회 위원장 등의 발언을 통해 『南北 地域政府』가 外交, 軍事權을 보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修正統一方案』을 검토하고 있음을 示唆했었음.

(라) 限界的인 南北對話

- 그러나, 北韓은 그동안 견지해온 통일방도를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固守하면서 內面的으로는 體制競爭에 한층 더 몰두할 것이 예상됨.
- 따라서 일부 예상대로 高位級 會談을 비롯한 對話와 交流가 조만간 재개된다 해도 統一志向의 可視的 成果를 기대하기에는 時機尙早라고 생각됨.
- 즉, 北韓은 赤十字會談과 같이 人的交流에 따른 개방물질 유입으로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교류등은 될 수 있는한 지양할 것이나, 스포츠 분야에서의 單一팀 構成, 共同出戰 등과 같은 誇示用 交流活動은 적극 활용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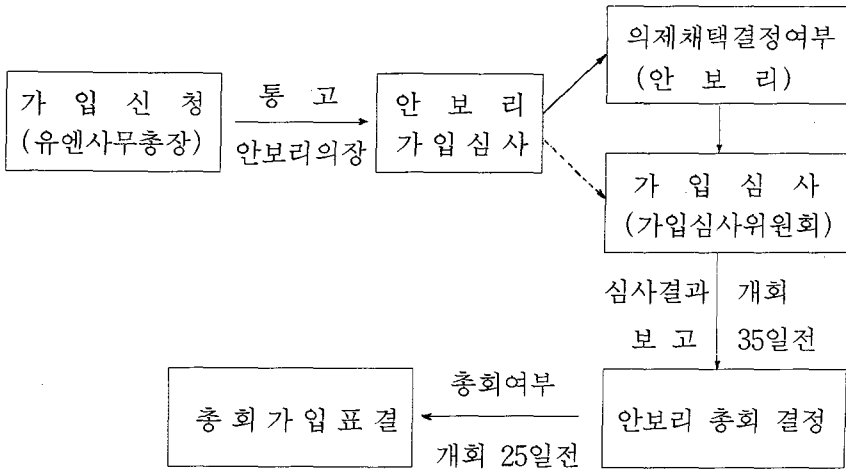
로 전망됨.

- 특히, 南北 頂上會談은 北側이 그간 유엔가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하나로 내세워 온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것 또한 내용 보다 모양과 선전효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함.

## 〈 附 錄 〉 南北韓 유엔加入의 諸節次 및 分斷國 유엔加入 事例

### 1. 南北韓 유엔加入의 諸節次

- 한 國家가 유엔에 加入하려면 다음과 같은 一般的 手順을 밟게 된다.



- 유엔加入은 유엔憲章과 안보리 의사규칙에 따라 加入希望國 外務長官이 유엔事務總長에 加入申請書 提出에서 부터 시작.
- 事務總長은 安保理議長에게 접수사실을 통고. 安保理가 심사에 착수함. 加入申請案이 안보리 의제 채택여부 결정에서 안보리의 제로 채택되면 안보리는 이를 加入審査委員會에 회부, 심사에 착수함. (加入審査委員會는 安保理 15個國 全원이 되며 늦어도 총회개회 85일전에 安保理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加入審査委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5개 安保理 理事國중 9個國의 贊成을 얻으면 됨. 이단계에서는 5個常任理事國의 全員贊成이 반드시 필요함. 加入審査委員會는 美·英·佛·蘇·中 등

常任 5個國, 쿠바·예멘·루마니아·코트디부와르·자이르·오스트리아·벨기에·에콰도르·인도·짐바브웨 등 非常任 10個國으로 구성. 非常任理事國의 任期는 2年임).

- 이어, 安保理는 加入審査委員會의 審査結果를 토대로 본격심사를 벌이게 됨(이 審査에는 常任理事國을 포함한 9個國의 贊成이 필요함)
- 安保理의 審査는 「申請國家의 平和愛護性」, 「유엔憲章 遵守任務」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뒤 추천여부를 결정함.
- 이어 安保理는 정기회기 시작 25일전에 總會로 案件 回附, 그러나 안보리 심사가 이기간내에 끝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회기로 이관됨(유엔정기 총회는 그해 12월로 활동이 끝나나 다음해 定期總會 개시 전날까지는 閉會되지 않기 때문에 「續開會議」를 열수 있음. 또 특별사안이나 목적에 따라 臨時總會, 特別總會案이나 목적에 따라 臨時總會, 特別總會, 緊急總會가 소집될 수도 있음. 다만 9月 17日 열릴 올해 定期總會를 감안할 때 이번 유엔 加入申請은 8月 7日이 마감시한이 됨)
- 總會는 안보리의 加入勸告案 決議를 넘겨받아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치는데 投票國家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입이 確定됨(最近의 趨勢는 通常的 案件인 경우 토론을 생략한 채 滿場一致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도 이런 방식으로 컨센서스(Consensus) 즉 無投票合議라고 함)
- 韓國은 지난 49年以來 75년까지 독자적으로 5회에 걸쳐 가입을 신청하거나 再審을 요청했으나 모두 蘇聯의 拒否權行事로 安保理의 議題採擇 段階에서부터 무산돼 本格審査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했음.
- 그러나, 北韓이 유엔加入申請 希望을 밝힘에 따라 南北韓의 유엔加入이 既定事實化 된 만큼 과거의 이러한 節次的 障礙는 이미 해소된 상태라 할 수 있음.

- 실제로, 南北韓이 유엔加入을 모색하는 방법은 새로운 申請書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미 安保理에 제출돼 議題採擇이 안됐거나 否決된 加入案의 再審을 要請하는 방안등 두가지가 있음.
- 韓國의 경우 75年 9月 議題採擇過程에서 否決된 申請案에 대해, 北韓도 52年 朴憲永 당시 外交部長 名義로 제출됐다가 부결된 가입신청에 대해 再審을 요청하는 길이 있으나 새로운 加入案 提出方案이 채택될 것으로 확실히 됨.
- 그러나, 加入申請은 두나라가 함께 가입하는 「單一 文件」으로의 제출은 案保理 規程上 不可能하고 일단은 該當國의 外務長官이 각각 유엔事務總長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同時加入을 위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제출하는 식으로 모양을 갖추는 것은 가능하나 「單一案」으로 만들어 신청하기는 節次上 불가능하다는 뜻임.
- 다만, 南北韓이 함께 加入申請書를 낼 경우 安保理에서 이를 「單一議題」로 만들어 審査 및 推薦節次를 밟아 효과와 명분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짐.

## 2. 分斷國 유엔 加入 事例

### 가. 分斷國 유엔加入 實際

- 2次大戰以後 分斷國으로서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은 獨逸, 예멘, 中國 그리고 베트남 등 모두 4개국임.
- 獨逸과 예멘은 각각 統一以前에 별도로 유엔會員國의 지위를 누리다 統一後 유엔에 가입되어 있음.
  - － 東西獨 유엔가입은 73년9월 각각 하나의 主權國으로 이뤄졌음. 즉 兩獨 당사자간 먼저 相互 實體를 認定한 다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手順을 밟았음. 실제로 東 西獨은 유엔에 가입하기 약 1年前인 72年 11月 상호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現存國境線 認定, 相互武力 不使用,

軍備縮小 會談 開催, 相互交流 等に 관한 基本條約을 맺었음.

- 南北예멘의 경우, 먼저 北예멘이 18년간의 터키지배에서 獨立하고 난후 1947년에 유엔에 加入했음. 그러나 당시 南예멘은 아직까지 英國의 保護領下에 놓여 있었음. 南예멘이 유엔에 加入하게 된 것은 英國으로부터 獨立한 67년의 일이었음.
- 中國은 臺灣의 유엔代表權을 박탈시키고 안보리 常任理事國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아직 분단된 상태에 놓여 있음.
- 베트남의 경우는 사이공의 함락으로 武力統一이 달성된 후인 77년 유엔會員國이 되었음.

#### 나. 示唆點

- 73년 東西獨의 유엔가입은 69년에 執權한 西獨의 브란트 사민당정권이 추진 해 온 東方政策의 결실이었다고 전해짐. 먼저 東西獨은 UN加入 약 1년전인 71년에 兩獨 基本條約을 締結 信賴構築에 성공했음. 결국 兩獨의 유엔加入은 이런 信賴關係의 國際的 確認 措置로 이해됨.
- 특히 兩獨政府는 基本條約 締結以後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에 주력하기 위해 수시로 실무접촉을 갖고 수많은 합의서, 의정서를 交換 郵便 및 電信交流, 非商業的 支拂 및 清算關係 등에서의 合意, 境界線 委員會 活動의 經過 및 文化協定 등은 兩獨 交流 노력의 대표적인 것들임.
- 그리고, 무엇보다도 東西獨間의 信賴回復의 원동력은 활발한 人的 交流와 T. V 相互開放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相互交流 基本協定 締結 그리고 UN同時加入 등을 통한 相互 信賴回復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障壁을



넘으려던 수많은 독일인들이 숨졌는가 하면 兩國 頂上會談이 70年の 브란트-슈토프 會談後 11年만인 81年에야 열릴 정도로 兩獨 상호간에는 相互敵對와 不信이 澎湃하였음.

- 예멘의 경우, UN가입을 전후하여 이미 人的 交流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政治的 分節 이외에는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分斷狀態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統一前 北예멘과 南예멘이 각각 유엔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政治的 理念差異에 따른 여러 차례 국경분쟁을 치르는 등 政治的 摩擦을 보였음. 특히 南北예멘은 UN에 同時加入 되어 있는 상태에서 兩國 頂上會談을 통하여 2차례 이상의 統合宣布까지 하면서도 相互信賴回復 장치의 결핍으로 여러 차례의 武力衝突을 피할 수 없었음.
- 이상에서, 獨逸과 南北예멘이 示唆해 주는 것은 첫째, 유엔加入 그 자체가 平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둘째로, 유엔加入의 前提條件 즉 相互間에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조건이 완전하고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UN이라는 국제적 무대를 相互政治宣傳場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 그러므로, 東西獨과 같이 UN加入前 基本條約 締結을 통한 信賴構築 장치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南北韓 UN加入은 이제까지의 南北對話進展過程으로 미루어 상호간에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식의 차이를 확대 재생케 할 뿐만 아니라 南北예멘과 같은 政治的 摩擦을 보다 더 增幅시킬 가능성이 큼.
- 결국 이렇게 될 경우 南北韓의 先 유엔 同時加入은 分斷의 固着化를 야기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고 추정됨.